

서울남부지방법원 2024. 5. 22 선고 2024가단1365, 2024가단1372(병합) 판결

[건물명도등청구의 소 · 손해배상등청구의 소]

전 문

원 고 A

피 고 B

변 론 종 결 무변론

판 결 선 고 2024. 5. 22.

주 문

1. 피고는 원고에게,
가.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을 인도하고,
나. 2024. 2. 24.부터 가.항 기재 각 부동산 인도 완료일까지 월 2,500,000원의 비율로 계산한 돈을 지급하고,
다. 54,200,000원을 지급하라.
2. 소송비용은 피고가 부담한다.
3. 제1항은 가집행할 수 있다.

N

청 구 취 지

주문과 같다.

이 유

1. 청구의 표시

-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임대차계약 해지에 따른 인도청구 및 인도 완료일까지 점유에 따른 부당이득금 반환 청구(2024가단1365)

- 위 임대차계약에 따른 미지급 임대료 3,760,000원, 부가가치세 19,440,000원 및 피고의 별지 목록 기재 각 부동산 불법 전대로 인한 부당이득금 내지 손해배상금 31,000,000원 청구(2024가단1372)

2. 무변론판결 (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, 제257조 제1항)

판사 김종찬

별지